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박대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652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2. 19.

발 의 자 : 박대출 · 이용호 · 윤한홍
김용판 · 金炳旭 · 박성민
김예지 · 송석준 · 윤영석
정희용 · 권명호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.

그러나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, 최근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비과세혜택의 부재로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어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기업의 출산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자녀 1명당 3억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(안 제12조).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호머목 중 “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”를 “6세”로 하고, 같은 호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호아목 4) 중 “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”를 “6세”로 하고, 같은 목에 6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처.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
급여로서 자녀 1명당 3억원 이내의 금액

6)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종교단체
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자녀 1명당 3억원 이내의 금액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제3호처목 및 같은 조 제5호아목6)의 개정규정은 2024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비과세소득)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 세하지 아니한다.	제12조(비과세소득) ----- ----- ----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소득	3. ----- ----- -----
가. ~ 러. (생 략)	가. ~ 러. (현행과 같음)
머. <u>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(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 로 판단한다) 자녀의 보육 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</u>	머. <u>6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버. ~ 저. (생 략)	버. ~ 저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처.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 부터 받는 급여로서 자녀 1명당 3억원 이내의 금액</u>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5.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	5. ----- -----
가. ~ 사. (생 략)	가. ~ 사. (현행과 같음)

아.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) ~ 3) (생 략) 4) <u>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 세 이하(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한다) 자녀의 보육과 관 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20 만원 이내의 금액</u> 5) (생 략) <u><신 설></u> 자. (생 략)	아. ----- ----- ----- 1) ~ 3) (현행과 같음) 4) <u>6세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5) (현행과 같음) 6) <u>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 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자녀 1 명당 3억원 이내의 금액</u> 자. (현행과 같음)
---	---